집회·시위 소음관리 안내

- □ **확성기등의 소음기준**(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)
- 등가소음도는 dB이하. 1회라도 기준 초과 시 소음기준 위반.
- 최고소유도는 dB이하. '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' 시 소음기준 위반.

<등가·최고소음도 위반시 통보 절차 안내>

통보방식은 전화 또는 문자로 전송되며, 소음도 기준 초과 : 위반 사실 등에 대한 명령서를 발송하오니 전화 응답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집시법에 따른 최고소음도 '초과 통보' 또는 등가·최고소음도 '소음 유지·중지 명령' 대상인 집회 주최자가, 집회 현장에 부재중 이거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 주관자 등 실질적 집회 주최자에게 통보됩니다.
 - **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**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.
 -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**관할** 경찰관서장은 △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△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△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 - 또한, 위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·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<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>

제14조(확성기등 사용의 제한)

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, 북, 정, 꽹과리 등의 기계·기구(이하 이 조에서 "확성기 등"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.
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

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2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

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4.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·방해한 자

2023 연 07월 07일 09시 16분

대 전 둔 산 경 찰 서 창



안내문 수령자 이승준

(문자메시지 전송 고지) (인)

1.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통보서

귀하(단체)가 개최하고 있는 집회·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성기 등소음을 측정한 결과,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측정시간			시	간대		
측정위치(장소)						
측정거리(m)			대상지역			
풍속 (씨s이하)		기준 소음도dB(A) (최고소음도 기준)	이하	측정된 소음도dB(A) (대상소음도)		

- 최고소음도는 '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'시 소음기준 위반이 됩니다.
- 기준을 초과(위반)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△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△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△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, 위 명령을 위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·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집회·시위의 주최자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(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)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(확성기등 볼륨을 조절하는 등 방법으로 소음의 크기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.)

연 월 일 시 분

대 전 둔 산 경 찰 서 장



수령자

(전화·문자메시지 고지) (인)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- 제14조(확성기등 사용의 제한)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, 북, 징, 꽹과리 등의 기계· 기구(이하 이 조에서 "확성기 등"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2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 - 4.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·방해한 자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확성기등의 소음기준)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			시간대			
소음도 구분		대상 지역	주간	야간	심야	
			(07:00 ~ 해지기 전)	(해진후 ~ 24:00)	$(00:00 \sim 07:00)$	
디사	치고사으트	주거지역, 학교, 종합병원	85dB 이하	80dB 이하	75dB 이하	
대상 소음도	기고고급도	공공도서관	85dB 이하	80dB 이하		
工品工	(Lmax)	그 밖의 지역		95dB 이하		

2. 기준 이하 소음유지(확성기등 사용중지) 명령서(등가소음도 위반)

○ 귀하가 개최하고 있는 집회·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성기 등 소음을 측정한 결과,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별표2에서 규정 하고 있는 등가소음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측정시간			시간	<u> </u>		
측정위치(장소)						
측정거리(m)			대상지역			
풍속 (Ms이하)		기준 소음도dB(A) (등가소음도 기준)	이하	측정된 소음도dB(A) (대상소음도)		

○ 집회·시위 주최자(또는 실질적 주최자)에게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을 명합니다.

✔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(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)

확성기 등 사용중지

○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(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)받을 수 있습니다.

연 월 일 시 분

대 전 둔 산 경 찰 서 황



수령자

(전화·문자메시지 고지) (인)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- 제14조(확성기등 사용의 제한)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, 북, 징, 꽹과리 등의 기계· 기구(이하 이 조에서 "확성기 등"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2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 - 4.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ㆍ 방해한 자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확성기등의 소음기준)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소음도 구분		대상 지역	시간대			
그림도 구군			주간(07:00~해지기 전)	야간(해진후~24:00)	심야(00:00 ~ 07:00)	
대상 소음도	등가소음도 (Leq)	주거지역, 학교, 종합병원	65dB 이하	60dB 이하	55dB 이하	
		공공도서관	65dB 이하	60dB 이하		
		그 밖의 지역	75dB 이하	65dB	이하	
	최고소음도 (Lmax)	주거지역, 학교, 종합병원	85dB 이하	80dB 이하	75dB 이하	
		공공도서관	85dB 이하	80dB 이하		
		그 밖의 지역		95dB 이하		